

현 행	개 정 안
신고자의 거주지가 접수기관의 관할구역 이 아닐 경우에는 과태료를 사전 징수 할 수 있다.
제7조 (납부독촉) 구청장은 과태료 납부의 무자가 법제132조의2 제2항 및 규칙 제 5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납 부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때 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 (은행납입인 경우에는 20일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제5호 서식의 독촉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7조 (납부독촉)
제10조 (시행세칙) (생략)	제10조 (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5. 11. 8.

총무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5. 10. 23.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95. 10. 24.
- 다. 상정일자 : 제34회 임시회 제2차위원회 ('95. 11. 8.)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춘기 총무과장)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제1동사무소 청사 신축이전에 따라 동조례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아현 제1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아현동 96-2에서 아현동 417-7로 변경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관수)

동 개정조례안은 1995년 10월 2일 아현제1동사무소가 청사신축으로 인하여 이전함에 따라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안	35	제출년월일 : 1995. 10. 23.
번호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제1동사무소 청사 신축이전에 따라 동조례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함.

2. 개정 주요골자

○ 아현제1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아현동 96-2에서 아현동 417-7로 변경
(안 제4조관련 별표1)

3.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1995. 8. 4. 법률 제4959호)
제6조 및 제15조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예산조치 필요성 : 불필요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동사무소 설치·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중 아현제1동의 동사무소 소재지란의 "아현동 96-2"를 "아현동 417-7"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0월 2일부터 적용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1] 동사무소 설치·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					[별표1] 동사무소 설치·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				
구분	동사무소 명칭	동사무소 소재지	법정동관할		구분	동사무소 명칭	동사무소 소재지	법정동관할	
			전지 역	일부 지역 관할				전지 역	일부 지역 관할
마포구	아현제 1동	아현동 96-2	생략		마포구	아현제 1동	아현동 417-7	생략	
(생략)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실사보고서

1995. 11. 9.

총무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5. 10. 31.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95. 10. 31.

다. 상정일자 : 제34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95. 11. 9.)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춘기 총무과장)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구 본청의 행정기구를 지방화, 분권화의 현실에 부합하고 행정수요변화에 신축성있게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행정조직으로 개편코자 행정수요가 폭주하고 업무량이 증가하는 부서는 확장 신설하고, 기능이

중복되거나 업무량이 감소되는 부서는 통·폐합하여 지방행정조직의 경영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기능이 중복되는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를 통·폐합하여 사회진흥과 신설 (안 제6조제4항)

○ 주택개량 행정수요 증가로 주택과를 주택과와 재개발과로 분과하여 주택재개발 업무 적극 추진 (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관수)

○ 동 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업무기능이 중복되어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를 없애고 대신 사회진흥과를 신설하여 그 업무를 전담토록 하고, 또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행정수요가 폭주하고 민원다발부서였던 주택과를 분과하여 재개발업무만을 전담할 재개발과를 신설하려는 것은 마